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323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09.11. ]

mss@mssfood.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7.18. ]

# 830샐러드앤키토

## 정 보 공 개 서

『830샐러드앤키토』가맹본부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침빛바다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침빛바다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창평로 224, 222

[대표 전화번호] 054-971-3367

[대표 팩스번호] 054-977-6374

[가맹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54-971-3367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1] 인근가맹점 현황

[별첨2] 가맹점 목록

[별첨3] 직영점 목록

[별첨4]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별첨5]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6] 메뉴 및 가격

[별첨7] 원·부재료 목록

[별첨8] 설비 및 집기 목록

[별첨9] 가맹본부 재무상황 근거자료

[별첨10]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사용 브랜드            | 주 소                       |         |              |              |
|-------------------------|-------------------|---------------------------|---------|--------------|--------------|
| 농업회사법인<br>주식회사<br>아침빛바다 | 830샐러드앤키토 외<br>1개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창평로 224, 222 |         |              |              |
|                         | 법인<br>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2015.11.18        | 2015.12.01                | 제정훈     | 054-971-3367 | 054-977-6374 |
|                         | 법인등록번호            | 175211-0049936            | 사업자등록번호 | 719-86-00239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대표이사 | 제정훈   | 830샐러드앤키토<br>외 1개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창평로 224, 222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제정훈                       | 054-971-3367 | 054-977-6374 |
| 사내이사 | 임우태   | 830샐러드앤키토<br>외 1개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창평로 224, 222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제정훈                       | 054-971-3367 | 054-977-6374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830샐러드앤키토”라 함)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830샐러드앤키토     |                                         |
| 상 호 | 830샐러드앤키토 OO점 |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과 상징하는 건축물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                           |
|-----------|-----------------------------------------------------------------------------------|---------------------------|
| 상표(서비스표)  |  | 상표 등록번호<br>제 40-2094980 호 |
| 광 고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명칭은 현재 브랜드를 나타내며, 상호는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내용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가맹점포명입니다.

## 5. 최근 3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7,511,730 | 5,562,743 | 1,948,987 | 14,781,007 | 560,677 | 484,025 |
| 2022년 | 7,895,410 | 5,463,451 | 2,431,958 | 14,847,411 | 624,179 | 482,970 |
| 2023년 | 8,761,144 | 5,901,837 | 2,859,306 | 15,801,566 | 557,735 | 427,348 |

그 근거자료는 [별첨9]와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관련<br>임원  | 제정훈 | 대표이사 | 2017년 12월~현재 | 대표 | 830샐러드앤키토 업무<br>총괄    |
|               | 임우태 | 사내이사 | 2017년 12월~현재 | 이사 | 830샐러드앤키토 업무<br>가맹점관리 |
| 가맹사업<br>비관련임원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2      | -   | 24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 | 농업회사법인<br>주식회사<br>아침빛바다 | 가맹사업<br>경영 | 2019년 04월<br>~2020년 05월<br>(자진취소) | 1973, 반할만떡 &<br>연탄불고기(등록번호:20190346)라는 영업표지의<br>외식사업 경영 |
| 가맹본부 | 농업회사법인<br>주식회사<br>아침빛바다 | 가맹사업<br>경영 | 2021년 03월<br>~현재                  | 미미관마라탕(등록번호:20214794)라는<br>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일        | 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등록<br>만료일<br>(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 상표<br>서비스표 | 2023.10.11 | 제40-2094980호 | 농업회사법인<br>주식회사<br>아침빛바다 | 2033.10.11.<br>(2023.10.11.)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 본부의 [830샐러드앤키토] 가맹사업 현황

### 1. [830샐러드앤키토]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2년 06월 08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2년 04월 27일)

### 2. [830샐러드앤키토] 연혁

| 가맹본부<br>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br>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농업회사법인<br>주식회사<br>아침빛바다 | 830샐러드앤<br>키토 | 제정훈 | 2022년 06월<br>~현재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창평로<br>224, 222 |

### 3. [830샐러드앤키토]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830샐러드앤키토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한식  | 김밥 및 샐러드 전문 |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830샐러드앤키토]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 전체 | -          | -   | -   | 4          | 3   | 1   | 3          | 1   | 2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4          | 3   | 1   | 3          | 1   | 2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5. 최근 3년간 [830샐러드앤키토]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년 | -  | -     | -     | -     | -     | -  |
| 2022년 | -  | 3     | -     | -     | -     | 3  |
| 2023년 | 3  | -     | 2     | -     | 2     | 3  |

## 6. [830샐러드앤키토]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830샐러드앤키토]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br>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                       |                                |    | 2021.12.31. | 2022.12.31. | 2023.12.31. |
| 가맹본부 | 농업회사법인<br>주식회사<br>아침빛바다 | 1973, 반할만떡<br>& 연탄불고기 | 20190346<br>(20.05.07<br>자진취소) | 분식 | -/-         | -/-         | -/-         |
| 가맹본부 | 농업회사법인<br>주식회사<br>아침빛바다 | 미미관마라탕                | 20214794                       | 중식 | 17/0        | 31/0        | 40/0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30샐러드앤키토]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

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역 | 2023년<br>말<br>가맹점 수 | 2023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br>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br>매출액(하한) |             |      |
|    |                     | 연간<br>평균<br>매출액 | 면적<br>3.3㎡당 | 상한               | 면적<br>3.3㎡당 | 하한               | 면적<br>3.3㎡당 |      |
| 전체 | 1                   | 해당없음            |             | -                |             | -                |             | 5곳미만 |
| 서울 | -                   | 해당없음            |             | -                |             | -                |             |      |
| 대구 | 1                   | 해당없음            |             | -                |             | -                |             | 5곳미만 |
| 부산 | -                   | 해당없음            |             | -                |             | -                |             |      |
| 인천 | -                   | 해당없음            |             | -                |             | -                |             |      |
| 광주 | -                   | 해당없음            |             | -                |             | -                |             |      |
| 대전 | -                   | 해당없음            |             | -                |             | -                |             |      |
| 울산 | -                   | 해당없음            |             | -                |             | -                |             |      |
| 세종 | -                   | 해당없음            |             | -                |             | -                |             |      |
| 경기 | -                   | 해당없음            |             | -                |             | -                |             |      |
| 강원 | -                   | 해당없음            |             | -                |             | -                |             |      |
| 충북 | -                   | 해당없음            |             | -                |             | -                |             |      |
| 충남 | -                   | 해당없음            |             | -                |             | -                |             |      |
| 전북 | -                   | 해당없음            |             | -                |             | -                |             |      |
| 전남 | -                   | 해당없음            |             | -                |             | -                |             |      |
| 경북 | -                   | 해당없음            |             | -                |             | -                |             |      |
| 경남 | -                   | 해당없음            |             | -                |             | -                |             |      |
| 제주 | -                   | 해당없음            |             |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각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알려주신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다만, 2023년에는 가맹점이 5곳 미만이라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830샐러드앤키토]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830샐러드앤키토]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1개         | 572일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 및 지역 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 [830샐러드앤키토] [미미관마라탕]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부담하는 기준은 [V-9-1]]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단위: 천원) |      |     | 비고 |
|----|-------|----|---------------|------|-----|----|
|    |       |    | 합계            | 가맹본사 | 가맹점 |    |
| 합계 | (비공개) | -  | 272,669       | -    | -   | -  |
| 광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우리은행    | 철곡지점  |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10 | 052-322-5437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작성된 예치신청서를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우리은행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 후 [www.wooribank.com](http://www.wooribank.com)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상단 우측의 ‘전체서비스-우리에스크로’ 클릭 후 ‘MY에스크로’ 클릭 후 하위 메뉴 ‘가맹금 예치신청’에 접속하여 가맹금 예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보험인(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                    |      |
| 보험계약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침빛바다(830샐러드앤키토) | 가맹본부 |
| 피보험인<br>(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 가맹점사업자                       |      |
| 보험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또는 개점일 중 빠른 날     |      |
| 보험금액                  | 예치가맹금                        |      |
| 보장범위                  |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

|           |                                                                       |  |
|-----------|-----------------------------------------------------------------------|--|
|           | “Ⅳ. 1.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참조                                         |  |
| 지급조건      |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
| 보험금의 수령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br>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 결정 →<br>보험금 지급 |  |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830샐러드앤키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11,000 |           |                       |                                       |                                                                                 |
| 가입비 | 8,800  | 가맹 계약과 동시 |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 가맹점 모집과 오픈을 위해 실제로 들어간 소멸되는 비용은 반환 안됨 | -가입비(가맹비의 20%)<br>-점포 실사(가맹비의 30%)<br>-오픈 및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제공과 오픈 지원의 대가(가맹비의 50%) |

|     |       |  |  |                     |                        |
|-----|-------|--|--|---------------------|------------------------|
| 교육비 | 2,200 |  |  | 교육 개시 이후에는<br>반환 안됨 | -개점 전 조리/서비스<br>/운영 교육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총계          | 2,000 |           |                                                                  |    |
| 계약이행<br>보증금 | 2,000 | 가맹 계약과 동시 | 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br>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br>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13,000             |
| 가맹비 | 8,800              |
| 교육비 | 2,200              |
| 보증금 | 2,000              |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천원) | 면적 3.3㎡당<br>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계 |      | 36,850 | 3,685          |      |      |    |

|                  |                         |                                                                                                                      |       |                               |               |  |
|------------------|-------------------------|----------------------------------------------------------------------------------------------------------------------|-------|-------------------------------|---------------|--|
| 인테리어<br>(점포내장공사) | 협력업체<br>(미지정)           | 33㎡(10평) 기준 17,600<br>[벽면,천장,바닥,설비,전<br>기공사]<br>(철거, 금속, 냉난방,<br>어닝,후드,소방공사<br>전기증설공사,<br>상하수도신설, 문교체,<br>화장실 공사 별도) | 1,760 | 계약시 50%<br>중도금 30%<br>완공시 20% | 공사 전<br>계약 취소 |  |
| 외내부 간판           | 협력업체<br>(미지정)           | 4,620<br>[전면간판,돌출간판]                                                                                                 | 462   | 계약시 50%<br>완공시 50%            | 공사 전<br>계약 취소 |  |
| 기기 및 기물          | 협력업체<br>(미지정)<br>(협력업체) | 11,550<br>[4구냉장냉동고,김밥/샐<br>러드냉장고<br>각1개,싱크대,제빙기,간택<br>기,조리대2개,음료냉장고,<br>캔실러,기본 주방기물<br>외]                            | 1,155 | 물건입고시<br>100%                 | 상품<br>미공급시    |  |
| 가구               | 협력업체<br>(미지정)           | 660<br>[테이블,의자<br>(2set 기준)]                                                                                         |       | 물건입고시<br>100%                 | 상품<br>미공급시    |  |
| 홍보물              | 협력업체<br>(미지정)           | 550<br>[내외부사인물,홍보물,액<br>자,앞치마]                                                                                       |       | 물건입고시<br>100%                 | 상품<br>미공급시    |  |
| 초도물품             | 가맹본부                    | 1,870<br>[반미바게트 등]                                                                                                   |       | 물건입고시<br>100%                 | 상품<br>미공급시    |  |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하여야 합니다. 직접 설치/구매 시 **3.3㎡당 금삼십삼만원정(₩330,000원/부가세포함)**을 점포설비 및 도면 등과 관련된 노하우 제공 및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른 설계·시공의 준수여부 확인, 가맹본사 직원 파견 등에 따른 비용으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비고                                                               |
|-------|---------------------------------------------------------------------------|------------------------------------------------------------------|
| 가맹희망자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점 입점 위치 확정 | 당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br>보건증 발급 가능 및 만20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보건증 발급가능자 일 것<br>만18세 이상일 것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830샐러드앤키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8)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금의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 비고 |
|----|------|----|------|------|----------|----|
|----|------|----|------|------|----------|----|

|                   |      |                                                                                                               |                               |           | 사유    |                |
|-------------------|------|---------------------------------------------------------------------------------------------------------------|-------------------------------|-----------|-------|----------------|
| 광고분담금             | 가맹본부 | 가맹본부 20%<br>가맹점사업자 80%                                                                                        | 통지받은<br>날로부터<br>15일 이내        | 광고<br>미집행 | 광고 집행 | 가맹점사업<br>자에 균분 |
| 판촉분담금             | 가맹본부 | 협의<br>단, 가맹점사업자가<br>직접 판매하는 상품의<br>할인비용이나 직접<br>제공하는<br>경품·기념품·팝플렛·전<br>단·카달로그 등의<br>홍보물 등의 비용은<br>가맹점사업자가 부담 | 통지받은<br>날로부터<br>15일 이내        | 판촉<br>미집행 | 판촉 집행 |                |
| 로열티               | 가맹본부 | 매월 매출액의<br>1.1%(부가세 포함)                                                                                       | 매월 5일                         | 미반환       | 수수료   |                |
| 영업표지 변경에<br>따른 비용 | 가맹본부 | BI/CI 개발비용은 본사<br>부담.<br>각 가맹점내의 간판,<br>설비 변경은 협의하여<br>부담                                                     | 협의                            | 미반환       | 변경설치  |                |
| 점포환경개선<br>비용      | 미지정  | 가맹본부 부담비용을<br>제외한 나머지                                                                                         |                               |           |       | VII-1참조        |
| 제조물 책임보험<br>화재보험  | 미지정  | 실비                                                                                                            | 지정일                           | 미반환       | 실사용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12%                                                                                                           | 지급기일의<br>다음날부터<br>지급하는<br>날까지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점의 영업상황 등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
| 재고관리   |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 수시 | 문의:운영팀<br>(054-971-3367) |
| 회계처리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 수시 | 문의:운영팀<br>(054-971-3367) |
| 매장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SCM(품질, 서비스, 청결, 멤버십) 점검</li> <li>- 매장 전반 위생 상태 점검</li> <li>- 인테리어·기기 A/S 접수 및 처리</li> </ul> | 수시 | 문의:운영팀<br>(054-971-3367) |
| 클레임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클레임 접수 및 처리</li> <li>- 매장 내 고객 서비스 실태 점검</li> </ul>                                        | 수시 | 문의:운영팀<br>(054-971-3367) |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요구에 의하여 점포를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용은 해당 사유를 감안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30일]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가맹계약 유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을 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관계를 탈퇴할 수 있으며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는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변경된 종전의 영업표지는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종전 영업표지가 부착된 물품과 기기 및 점포설비 등은 당사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영업표지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맹본부 제품의 제조방법, 레시피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교육비를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된 후 귀하의 모든 권리는 즉시 소멸되며, 매장 내의 집기 비품 등 [830샐러드앤키토]의 로고가 사용된 모든 내용물의 처분에 관하여서는 당사의 서면 확인을 득하여

야 하며, 만일 계약 종료일까지 상호·간판 등 당사의 로고가 부착된 각종 물품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 또는 방치할 경우, 귀하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종료 **[15일]** 전까지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전산장치 DB 등 영업 관련 자산 및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 당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각종 유·무형의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 및 당사의 거래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당사의 영업 비밀, 사업내용, 고객 정보 등 당사의 사업에 피해가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830샐러드앤키토]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830샐러드앤키토]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830샐러드앤키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는 [830샐러드앤키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별첨6] 메뉴 및 가격 참조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서면시정 요구<br>2회 위반: 구두+서면시정요구<br>3회 이상: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맹계약해지 통지 |    |

가맹점 상황(점포의 위치, 점포의 크기, 고객성향 등)에 따라 가맹본부의 메뉴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귀하가 임의로 메뉴를 추가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기 메뉴 이외에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신 메뉴를 수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br>(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br>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소비자 이외의<br>제3자 또는<br>다른 가맹점 | 본 정보공개서 V-3-1)에서<br>지정된 가맹점 판매 메뉴 | 소비자 이외의<br>제3자 또는 다른<br>가맹점에게<br>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 구두 경고<br>2회 위반 : 서면 시정경고<br>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6]과 같습니다.

귀하가 [별첨6]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김밥 및 샐러드 전문점 | 830샐러드앤키토   |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가맹점소재지 중심으로 반경1km를 기준<br>(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다만, 그 외 지역의 경우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권에 따라 영업지역을 설정하기로 하며, 지도로 표시하며 별도 첨부합니다.

1. 왕복 8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
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
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
4. 서울 도심의 복합(대형)상권 및 지방 중심(도심)상권
5. 기업체·학교·관공서·병원·대형마트·연금매장·백화점·할인점·지하철역내 등에 Shop In Shop 형태로 출점하는 경우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br>(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                                                                                          |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                 |                                                                                 |                                                                                          |

|                                                                            |  |  |
|----------------------------------------------------------------------------|--|--|
| 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830샐러드 앤키토]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830샐러드앤키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통업체명                           | 주소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온라인 | 옥션<br>G마켓<br>네이버<br>카카오<br>등 다수 | www.auction.co.kr<br>www.gmarket.co.kr<br>www.naver.com<br>www.kakaocorp.com | 곤약 떡볶이<br>곤약 뽕끼<br>곤약 만두 | 밀키트 형태로<br>판매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배달앱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정보공개서 V-4-4)에 따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합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26.03%                | 73.97%  | 0%            | 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

| 연도   |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0%          | 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830샐러드앤키토]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br>(계약만료일: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br>(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br>(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br>계약조문 |
|----------------------------------------|------------|
| ○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 계약서        |

|                                                                                                                                       |         |
|---------------------------------------------------------------------------------------------------------------------------------------|---------|
| ○ “을”이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 제9조 제2항 |
|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을”이 2회 이상 약속한 기한 내에 물품의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 제27조제1항 |
| ○ “갑”의 품질 관리 및 위생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
| ○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
| ○ “을”이 “갑”과 협의하여 정한 광고 및 판매 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 ○ “을”이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입한 물품이 “갑”이 정한 품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
| ○ “을”이 조리 매뉴얼 미 준수 등 “갑”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
|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정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갑”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중요한 영업 방침 및 관리 감독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 ○ “을”이 “갑”의 승인 없이 가맹점을 이전하거나 양도(사업자 명의변경 포함)한 경우                                        |             |
| ○ “을”이 “갑”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서면 또는 온라인을 포함한 시정 공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
| ○ “을”이 경업을 하거나 “을”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             |
|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갑”의 상품, 자재에 대한 정상적인 조달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             |
| ○ “을”이 기타 본 계약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서 제39조제1항 |
| ○ “을”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             |
| ○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갑”이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도 교육 종료 후 30일 내에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 |             |

|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을”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 “갑”에게 납부할 비용을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
| ○ “을”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브랜드 보호와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받은 경우 |  |
| ○ “을”이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서면 승인없이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                                            |  |
| ○ 기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건      |
|-----------------------------------------------------------------------------------------------------------------------------------------------------------------------------------------------------------------------------------------|--------------|
| ○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 계약서 제39조 제2항 |
| ○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              |
|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br>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br>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을”이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실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
| ○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b>15일</b>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본사<br>(054-971-3367)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영업표지 등에 대한 사용권, 가맹점 모집을 위해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양수인의 매장 오픈 지원을 위한 비용), 교육비 및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

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비고                 |
|------|-----------|------------------------|-----------------------------------------------------------------------------------------------------------|--------------------|
| 상속   | 본부 승인시 가능 |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부의 상속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 교육수료 및 교육비와 보증금 지급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                    |
| 업무위탁 | 본부 승인시 가능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830샐러드앤키토]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김밥 및 샐러드 전문점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본사<br>(054-971-3367)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830샐러드앤키토]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11:00~20:00 | 주6일(일요일 휴무) | 문의: 본사<br>(054-971-336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개별 점포별로 상이 | 자율       | 배우자, 친·인척 등 |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수시      | 가맹관리팀 |    |
| 친절도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수시      | 가맹관리팀 |    |
| 품질 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가맹관리팀 |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830샐러드앤키토] 브랜드 이미지 재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행사에 따라 비용은 실비를 원칙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비고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광고 전체 행사 | 상품광고         | 광고비의 20%   | 광고비 80% 중 가맹점사업자간에 균분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
|          |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 광고비의 20%   | 광고비 80% 중 가맹점사업자간에 균분                                                                   |                                                             |                                               |
|          | 가맹점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판촉행사     | 공동판촉 활동      | 협의         | 협의<br>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카드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
|          | 기타 개별행사      |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                                                           |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가맹점사업자 전원에게 균분하여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을 분담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MEDIATION AGENCY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가능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에 따라 최초 가맹금의 10~50%를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최초가맹금의 10%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최초가맹금의 30%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최초가맹금의 50%

단,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의 내·외장 공사 등을 착수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위약벌과 별도로 투입된 점포 공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의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에게 위약벌로서 **[금삼천만원정(₩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의적인 중도 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배상액은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남은 계약일 × 금삼만원정(₩30,000)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한도는 **[금삼천만원정(₩3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금삼천만원정(₩30,000,000)]**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하며, 무단 상표 사용의 경우 그 사용기간 동안 위약벌로 **[계약 종료 또는 해지일 이후에 판매된 모든 제품 매출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손해배상금으로 **1일당 금일십만원(₩100,000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830샐러드앤키토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정(₩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7)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가맹본부가 2회 이상 시정조치에도 시정이 안될 시에는 가맹본부에 의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일금일천만원정(₩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8)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금액      |
|----------------|--------------------------------------------------------|---------|-----------|
| 합계             |                                                        | 45일 내외  | 11p~12p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5    |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br>-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br>- 가맹희망자 상담 | D-45~43 |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br>-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 필요시 실시  |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43~31 |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 D-30    | -         |
| 가맹금 예치         | - 가맹금 예치                                               | D-29    |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 | -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일정 확인                                              | D-24    |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5  | -         |

|         |                                       |                 |         |
|---------|---------------------------------------|-----------------|---------|
|         |                                       | (20일)           |         |
| 교육 실시   | - 메뉴 조리 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7~4<br>(14일) | 가맹금에 포함 |
| 설비 및 집기 | - 주방 및 홀 설비<br>-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 | D-10~2          |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과 비용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 또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연락처: 1588-1490,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br>사유                                                                         | 가맹본부<br>부담<br>비용항목                                                              | 가맹본부<br>부담<br>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br>제외사유                                                                                   | 비<br>고 |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br>○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 | ○간판 교체 비용<br>○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br>○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        |

|                             |                                                  |  |                                                                                                                                                                                                                                                                                                                                                                                                                |                               |  |
|-----------------------------|--------------------------------------------------|--|----------------------------------------------------------------------------------------------------------------------------------------------------------------------------------------------------------------------------------------------------------------------------------------------------------------------------------------------------------------------------------------------------------------|-------------------------------|--|
| 상적인 영업에<br>현저한 지장을<br>주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br>추가 공사를<br>실시함에 따라 소<br>요되는 비용은<br>제외) |  | 별도의 합의가 있는<br>경우 1년의 범위내에<br>서 분할지급 가능)<br>○ 가맹점사업자가<br>가맹본부 또는 가<br>맹본부가 지정한<br>자를 통하여 점포<br>환경개선을 한 경<br>우에는 점포환경<br>개선이 끝난 90일<br>이내에 가맹본부<br>부담액 지급<br><분할지급 시 절차><br>○ 가맹점사업자의<br>비용 청구(공사계<br>약서 등 공사비용<br>을 증빙할 수 있<br>는 서류 첨부) → 3<br>차에 걸쳐 가맹본부<br>부담액을 분할 지<br>급<br>(1차 : 청구일로부터<br>90일 이내, 총<br>부담액의 30%,<br>2차 : 1차 지급일로<br>부터 60일 이내, 총<br>부담액의 30%, 3차<br>: 2차 지급일로부터<br>60일 이내, 총 부담<br>액의 40%) | 아니하거나 이미<br>지급한 경우에는<br>환수 가능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 고                            |
|--------------------|-------------------------------------------------------------------------------|------------------------------------------------------------------------------------------------------------------------------------------------------------|----------------------------------------------------------------------|--------------------------------|
| 가맹본부<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br>고객관리,<br>위생관리,<br>교육훈련, 회계 등<br>가맹점 운영 전반에<br>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br>부담                                                           | 문의:<br>가맹관리팀<br>(054-971-3367) |
| 가맹점<br>사업자<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br>고객관리,<br>위생관리,<br>교육훈련, 회계 등<br>가맹점 운영 전반에<br>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br>부담<br>(가맹금에<br>포함된<br>통상의<br>경영지도<br>비용을<br>초과한<br>부분에<br>한함) | 문의:<br>가맹관리팀<br>(054-971-3367)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
| 해당사항<br>없음 |       |      |      |      |    |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830샐러드앤키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 교육 | 회사 소개, 메뉴 교육<br>매장 운영 등 | 실습교육<br>현장교육 | 가맹계약 체결 후<br>2개월 이내 | 필수 교육                          |
| 보수 교육 | 서비스 교육<br>종업원 관리 실무 등   | 실습교육         | 수시                  | 매년 비정기<br>교육으로<br>본사교육<br>일정참조 |
| 특별 교육 | 신메뉴 교육<br>고객 서비스 등      | 실습교육         | 수시                  |                                |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830샐러드앤키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         | 비고                     |
|--------------------|-------------------|------------|------------------------|
| 신규 교육              | 총14일<br>(1일 10시간) | 최초 가맹금에 합산 | 최초 계약시 이수<br>현장교육2일 포함 |
| 보수 교육<br>(서비스교육 등) | 1일 이상             | 가맹점사업자 부담  | 실비 책정후<br>가맹점사업자 통지    |

|                    |       |           |                     |
|--------------------|-------|-----------|---------------------|
| 특별 교육<br>(고객서비스 등) | 1일 이상 | 가맹점사업자 부담 | 실비 책정후<br>가맹점사업자 통지 |
|--------------------|-------|-----------|---------------------|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교육인원이 늘어날 경우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의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운영자는 당사의 기준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또는 개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가맹계약서 제39조에 근거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직영점 목록 및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NO | 지역 | 직영점명 | 주소                   |
|----|----|------|----------------------|
| 1  | 대구 | 범어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91, 1층 |
| 2  | 대구 | 칠곡점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65길 52   |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1년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산정기준                     |
|----------------------|--------------------------|
| 198,296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

|  |                                                                                |
|--|--------------------------------------------------------------------------------|
|  | 사업연도의 POS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하였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직영점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1670-0007)**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인근가맹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2] 가맹점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3] 직영점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4]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lt;수령 확인서 - 가맹점사업자&gt;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lt;수령 확인서 - 가맹본부&gt;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5] 가맹금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6] 메뉴 및 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7] 원·부재료(초도물품)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8] 설비 및 집기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9] 가맹본부 재무상황 근거자료

## 1. 2021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 2022년, 2023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10]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